



전기공사업법개정법률안

❖ 제정이유

전기공사업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기공사 수급한도액제한 등 각종 경쟁 제한적 행정규제를 폐기 또는 완화하고, 공사업자의 협회 가입 임의화와 기술인력 양성 및 인정기술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공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과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공사업자별 시공능력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실명제의 도입과 부적정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국가기술자격자 이외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경력을 국가기술자격자에 준하여 인정함으로써 공사업체의 인력난을 완화함(안 제2조제9조).

나. 공사업시장의 인위적분할로 업역분쟁과 업체간 경쟁을 저해하던 제1종 및 제2종 공사업 구분을 폐지하여 업체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매년 1회 발급하던 공사업의 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연중 수시로 발급도록 함으로써 공사업시장의 신규진입 제한을 철폐함(안 제5조).

다. 공사업자별로 수급한도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사를 수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던 수급한도액제한제도는 폐지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사업자별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면 발주자가 이를 참고하여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토록 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라. 전기공사기술인력의 직무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시공을 위하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및 양성근거를 마련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토록 함(안 제23조).

마. 공사업자에게 시공현장과 완공후 배전반에 공사업자명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하여 공사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부실시공을 폐지토록 함(안 제27조).

바. 공사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협회의 설립 및 가입을 임의화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산업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업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업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에 중소기업자 참여확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체 지원을 강화함(안 제41조).

아. 공사업 면허의 통합과 수시등록제로 전환 등 각종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폐지에 따른 부적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실시공 등 부적정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제44조 내지 제49조).

❖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추진내용

- '97. 7. 30 전기공사업법 입법 예고
- '97. 8. 4 전기공사업법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 공청회
- '97. 8. 19 법위원회 회의 개최
- '97. 8. 20 통상산업부에 전기공사업법 개정(안)건의 - 건의내용 : 첨부

전기공사업법 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법 현행	입법 예고 (안)	협회 건 의 (안)	사 유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전기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8. (생략)</p> <p>9. “전기공사기술자”라 함은 전기공사분야에 관한 기술 또는 기술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p> <p>(신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8. (취동)</p> <p>9. “전기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기술사·전기공사기사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을 말한다.</p> <p>10. “책임전기기술자”라 함은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사를 말한다.</p>	<p>○ 전기기술자와 공사기술자로 구분하여 기술자관리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와 전기공사협회로 이원화되어 업무의 혼란을 초래함</p> <p>○ 전기분야의 기술자제도를 전기기술자와 공사기술자로 구분할 실익이 없음</p> <p>○ 전기공사기술자와 전기기술자로 구분할 경우 전기기술자가 공사업체에 근무할 수 없게 되어 규제에 해당됨</p> <p>○ 공사업체의 인력난의 해소를 위하여 전기기술자가 필요시 공사업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p> <p>○ 전기공사협회의 당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안)참조</p>
<p>제3조(전기공사의 제한등)</p> <p>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p> <p>· <u>전기기술자</u></p> <p>·</p>	<p>제3조(전기공사의 제한등)</p> <p>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p> <p>②</p> <p>· <u>전기기술자</u></p> <p>·</p>	<p>제3조(전기공사의 제한등)</p> <p>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없다.</p> <p>②</p> <p>· <u>전기기술자</u></p> <p>·</p>	<p>○ 공사업자로 보조하고 무면허업자는 시공할 수 없도록함</p>
<p>제5조(공사업의 면허 및 갱신 등)</p> <p>①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p>	<p>제5조(공사업의 등록 등)</p> <p>①</p> <p>· <u>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u></p>	<p>○ 공사업의 등록제를 면허제로 유지하여 공사업의 난립을 방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여야 함</p>	<p>○ 공사업의 등록제를 면허제로 유지하여 공사업의 난립을 방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여야 함</p>

전기공사업법 시행	입 법 예 고 (안)	협 회 건 의 (안)	사 유
사업의 종류별로 통상산업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략)	업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종류별로 통상산업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좌동)	
제12조(신고) ①(생략) ②(생략)	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 공사업자는 상호 또는 명칭, 사무실의 소재지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기공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 공사업자는 상호 또는 명칭, 사무실의 소재지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 등 면허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술자의 입사·퇴사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전기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해 전기기술자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는 일원화되어야 이중취업 방지 및 고용창출 등 효율적 인력관리가 될 수 있음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위하여 제18조제2항의 전기기술자중에서 책임전기기술자를 지정하여 전기공사업의 현장에 배치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전기공사기술자의 배치) ① 전기공사기술자 ② 전기공사기술자 ③ 전기공사기술자	제22조(책임전기기술자등의 배치) ① 책임전기기술자등을 ② 책임전기기술자 ③ 책임전기기술자	○ 공사현장에 책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책임있는 공사를 시공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공사기술 배치를 배치하여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함
(신설)	제23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 및 교육등) ① 전기공사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직무능력 향상을 전기공	제23조(전기기술자의 양성교육) ① 전기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전기기술자	○ 지정교육기관에서는 기술자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전기공사업법 시행	입법 예고 (안)	협회건의의 (안)	사유
(신설) 제29조(시공 및 영업의 정지처분) ①(생략) ②(생략) 1 ~ 3. (생략)	사기술자의 양성 교육과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을 ②(생략) ③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과 직무능력향상교육 등에 관한교육훈련 제24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등) ① ~ ② (생략) 1 ~ 2. (생략) 3. 전기공사기술자 4. (생략)	의 양성 교육 ②(생략) ③ 전기기술자의 양성 교육에 관한 교육훈련의 제24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등) ① ~ ② (좌동) 1 ~ 2. (좌동) 3. 전기기술자 4. (생략)	○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전기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종으로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할 경우 동일한 기술자에 대하여 법의 이원화로 혼선을 초래함
(신설)	제26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생략) (신설)	제26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①(좌동) ②공사업자는 전기공사대상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대상시설물인 경우에는 공사감리원 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상시설물인 경우 공사업자가 확인하여 공사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진의하여 발주자가 공사감리원을 배치하도록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공사감리가 배치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에게 감리원배치를 진의할 수 있도록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제29조(시공 및 영업의 정지처분) ①(생략) ②(생략) 1 ~ 3. (생략)	제33조(시정명령등) (생략) 1 ~ 2. (생략) 3.	제33조(시정명령등) (좌동) 1 ~ 2. (좌동) 3.	○ 공사협회의 종류별로 난립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한국전기공사협회라 하여야함

전기공사업법 현행	입법 예고 (안)	협회건의 (안)	사유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기술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전기공사기술자를 · · · 전기공사기술자가 · · · 4 ~ 6.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책임전기기술자를 · · · 책임전기기술자가 · · · 4 ~ 6. (좌동)	
제35조(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설립) · · · ·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 · · · ·	제35조(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설립) · · · · · 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 · · · ·	제35조(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설립) · · · · ·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 · · · ·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생략) ②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생략) ②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좌동) ②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 또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 및 공사업체의 전기기술자관리 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제45조(벌칙) (생략) 1 ~ 5. (생략) 6.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를 전기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7 ~ 8. (생략) 9. (신설)	제45조(벌칙) (생략) 1 ~ 5. (생략) 6.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를 전기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7 ~ 8. (생략) 9. (신설)	제45조(벌칙) (좌동) 1 ~ 5. (좌동) 6.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전기기술자를 전기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7 ~ 8. (좌동)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착공한 전기공사업자	
제49조(벌칙) (생략) 1 ~ 7. (생략) 8. · · · 전기공사기술자가 · · · · · 9 ~ 10. (생략) (신설)	제49조(벌칙) (생략) 1 ~ 7. (생략) 8. · · · 전기공사기술자가 · · · · · 9 ~ 10. (생략) (신설)	제49조(벌칙) (좌동) 1 ~ 7. (좌동) 8. · · · · · 책임전기기술자가 · · · · · 9 ~ 10. (좌동) 제6장을 신설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법과 전기공사업법이 통합되어야 함	